

#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경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0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5. 24.

발의자 : 최경환<sup>국</sup> · 김광수 · 김삼화

김수민 · 김종회 · 박선숙

송기석 · 오세정 · 윤소하

이동섭 · 인재근 · 장병완

정인화 · 주승용 · 천정배

황주홍 의원(16명)

## 제안이유

버스 등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인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및 고령자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대부분의 대중교통시설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·운용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

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6조제2항제6호)

- 나.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(안 제17조의4 신설)
- 다.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설치(안 제21조제1항제6호 신설)

##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6. 보행환경 및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
제3장에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4(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) ①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6.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<u>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~ 9. (생 략)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보행환경 및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7조의4(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)</u> ①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</p>

<p>제21조(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)</p> <p>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 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21조(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